

대전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나11426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영재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담당변호사 국태준

변 론 종 결 2021. 5. 27.

판 결 선 고 2021. 6. 10.

제1 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7. 2. 선고 2019가단110442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123,817,80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23,817,80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소외 주식회사 C가 2015. 3. 10. 피고에게 91,124,730원을 증여한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1,124,7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피고가 2017. 10. 17.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을 설명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한 점이나 원고가 이른바 사해설립의 법리를 주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늦어도 2017.

10. 17.경 사해행위취소권의 요건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2019. 4.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2014. 9. 23.자 금전지급계약'의 취소를 구하였고, 2019. 11. 5.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¹⁾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대상으로 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권 행사는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관련 소송에 제출된 F은행의 2017. 7. 26.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에 피고가 2015. 3. 10.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7,815만 원을 이체한 내역이 나타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관련 소송에 제출한 2017. 10. 17.자 준비서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그 무렵 위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책임재산에 부족이 생기게 된다는 점까지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위 준비서면을 제출할 당시 이 사건 관련 소송에는 원고가 2015. 7. 31.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이 병합되어 진행 중이었는바, 만일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았다면 위 관련 소송에서 피고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사해행위취소청구로 변경하거나 사해행위취소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텐데, 그러한 조치가 시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위 관련 소송에서 원고의 법인격 부인론 주장을 다투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사해의사를 제척기간 내에 알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회사의 유일한 재산도 아니었으며, 위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5,000만 원 이상 상회하는 매매대금을 수령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소외 회사는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여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지게 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으므로, 사해의사도 없었다.

나.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4의 가.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사해행위 및 채무자의 사해의사

살피건대, 갑 제6,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서산시청, 대전 서구청, 국토교통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으로는 F은행 예금 337,475원, 공시지가 16,236,000원(= 1㎡당 49,200원 × 1,322㎡ × 330/1322) 상당의 서산시 I 임야 1,322㎡ 중 330/1322 지분, 공시지가 695,000원(= 1㎡당 69,500원 × 10㎡) 상당의 서산시 J 전 10㎡, 시가 1억 7,815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고, 그 합계액은 195,418,475원인 점, 소외 회사의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관련 소송 판결에 따른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 100,654,521원[= 9,900만 원 × (1 + 123/365)]이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 나아가 갑 제8,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매매계약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관련 소송은 원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4차7541호로 서산시 D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시작되었고, 이에 따라 매매대금 9,9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 정본이 2014. 11. 7.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다.

② 소외 회사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1억 7,815만 원을 수령하고서 그로부터 10분 내에 G에게 159,066,900원을 이체하였는데(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앞서 소외 회사가 G로부터 이체받았던 돈은 113,443,000원에 불과하다), 이를 포함한 매매대금의 지출내역이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③ 소외 회사는 적극재산 가액의 약 91%를 차지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현금으로 바꾸고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유일한 소극재산이었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이 사건 관련 소송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4개월이 경과한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까지 전혀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외 회사가 보유하던 적극재산 중 서산시 I 임야 지분은 대한민국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하여 압류된 상태였다. 그런데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9. 11. 5. 위 압류가 해제되자, 같은 날 소외 회사는 위 임야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였고, 피고는 이를 곧바로 L에게 이전해주었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또한 근저당권 말소 등으로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과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14호증 및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21.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G로 된 K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G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2015. 1. 22. K조합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가 2015. 3. 9. 대출금 1억 원을 모두 변제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K조합 명의의 위 근저당권은 2015. 3. 16.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여 이 사건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 경우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2)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법원의 변론종결 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인 1억 7,815만 원에 근접할 것으로 보이고, 위 K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은 2015. 3. 9. 이후 피담보채권액이 0원이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한도가 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1억 7,815만 원이다. 또한 이 법원의 변론종결 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155,511,369원[= 9,900만 원 × {1 + (4 + 43/365) × 5% + (2 + 158/365) × 15%}]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155,511,36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될 수 있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은 위 취소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을 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23,817,80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서 원고에게 123,817,80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매경, 판사 이정호, 판사 신옥영

별지

목 록

서산시 E 답 1683㎡. 끝.

1) 이와 같은 제1심에서의 청구변경이 청구기초의 동일성을 결여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 철회되었다.